

# 『3·1독립선언서』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anifesto』

오 용 섭 (Oh, Yong-Seob)\*\*

## ◁ 목 차 ▷

1. 서 언	4. 전 본
2. 인 쇄	4.1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소장본
2.1 인쇄일	4.2 이희선 소장본
2.2 인쇄매수	4.3 기타
3. 판본과 원본	5. 결 언
3.1 판본	<참고문헌>
3.2 원본	

## < 초 록 >

『3·1독립선언서』는 암울하던 일제강점기에 민족대표 33인이 발의하고,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독립을 국내외에 알린 문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보편적인 가치를 주는 문화유산이자 기록물이라고 하겠다. 그 중에서 두 점이 2016년 10월에 등록문화재가 되었고, 2015년 12월에 지정된 국가지정 기록물 제12호에도 독립기념관 소장의 두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3·1독립선언서』는 국가가 나서 보호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의 문화재이자 기록물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근자에 국가의 문화재이자 기록물로 인정받게 된 『3·1독립선언서』 원본, 판본, 조판, 전본, 인쇄일, 인쇄매수 등에 대해 서지적으로 살폈다.

要語: 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 보성사, 최남선, 이종일, 장효근, 오세창, 이규훈

## < ABSTRACT >

『March 1st Independence Manifesto』 (The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issued a declaration by the 33 Korean leaders on March 1, 1919 during black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lso Korean Peoples were possessed the manifesto yelled for Korean independence and waved the Korean flag on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this respect, 『March 1st Independence Manifesto』 is a cultural heritage and document of universal values for Koreans. Two selected among several 『March 1st Independence Manifesto』 becam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n Oct. 20, 2016. Also another two of 『March 1st Independence Manifesto』 owned by Independence Hall of Korea in Cheon-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became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No.12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on Dec. 2015. Now We should preserve it and then pass it down to our descendants.

In the study, I inspected in detail about original, different version, typesetting, document handed down printing, date of printing, number of copies of 『March 1st Independence Manifesto』.

Key words: Independence Manifesto, March 1st Independence Manifesto, the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Bo-seong-sa, Choi nam-seon, Lee jong-il, Jang hyo-gun, Oh se-chang, Lee gyu-hun

\* 이 논문은 2016년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u.ac.kr)

접수일: 2017년 8월 29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 1. 서 언

『3·1독립선언서』(이하 『독립선언서』로 약칭함)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문서이다.<sup>1)</sup> 민족대표들은 처음 건의서 형식을 고려하였으나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라는 세계대세를 따라 일본의 배척이 아닌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가 과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그것은 국한문 혼용체의 문장에다 난해한 한자가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는 명문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렵다거나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읽어야 하므로 선언문으로는 실격”<sup>2)</sup>이라는 엇갈리는 평가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독립선언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을 위한 것이었지만 일본인과 중국인들에게도 우리민족의 독립의지를 알릴 의도 역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sup>3)</sup>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은 물론 일본인과 중국인들도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의 강한 독립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준 역사적 사실을 인쇄하여 남긴 민족의 유산이다. 그래서 과거 이 『독립선언서』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성취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에 와서야 독립기념관 소장의 『독립선언서』 두 점을 포함한 48점의 독립선언서류가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라는 명칭으로 국가기록물 제12호로 지정되었다. 또 2016년 10월에는 『독립선언서』 두 점이 각각 등록문화재가 됨으로써 이제 『독립선언서』는 국가가 영구히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재이자 기록물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 『독립선언서』의 작성, 배포, 선언 배경 그리고 내용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논란의 대상이 되는 異本의 존재를 포함한 서지적인 연구는 별로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 분야의 연구는 원본 『독립선언서』를 가능한 한 많이 살펴야 하나, 전본이 소수인데다 기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원본은 대체로 비공개이거나 열람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침 필자는 국내에 전하는 선언서 원본들과 관련 자료를 살필 기회가 있었다. 부족하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알림으로써 추후 다방면에서 진행될 『독립선언서』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1) 『3·1독립선언서』의 실제 제명은 선언서이다. 이 시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선각자들이 인쇄하여 배포한 선언서 또는 독립선언서는 여럿 있다. 그래서 다른 선언서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3·1독립선언서』 또는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한다.

2) 려중동, “기미독립선언문의 잘못에 대하여,” 『모국어교육』 제10권 1호(1992), 31.

3) 일본에 보낸 독립통고서 요지와 미국 월슨대통령에게 보낸 동양평화의견서는 최남선의 『조선역사』(28-33) 등에도 수록되어 있다. 또 서방세계에도 우리의 독립의지를 호소문 형식의 문서로 알렸다. 곧 3·1독립운동 직후인 1919년 5월에 안승원,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와 한국인들의 평화적 저항을 대비시키며 전 세계 기독교도들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앞뒤 면에는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된 호소문을 수록하였으며, 제목은 『만국예수교우의계』(영문명은 『An Appeal to the Christian World』)이다.

## 2. 인 쇄

「독립선언서」는 2월 8일에 천도교 측의 이종일이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성취되지 못하였다.<sup>4)</sup> 얼마 지나지 않아 최남선이 「2·8독립선언서」를 참작하여 起草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최남선이 29세의 청년시절에 형식과 내용 그리고 표현까지 모두 자신의 의사로 작성하였다는 글<sup>5)</sup>과 민족대표들에 대한 일본 檢警의 취조서,<sup>6)</sup> 控訴公判記<sup>7)</sup>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보성사 총무 장효근의 일기<sup>8)</sup>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는 정재용이 북한산 정상에 새겨 놓은 암각문도 참고가 된다.<sup>9)</sup> 그리고 선언서와 함께 수록된 공약삼장 역시 최남선이 기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10)</sup> 이후 이 「독립선언서」는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 거의 모든 선언서류의 저본이 되었다.<sup>11)</sup>

최남선은 2월 22-23일까지 약 2주일간에 걸쳐 起草를 끝내고,<sup>12)</sup> 이를 최린에게 건네주자 최린은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등의 동의를 얻은 뒤에 기독교 측 함태영에게 건네줌으로써<sup>13)</sup> 민족대표의

- 
- 4) 이종일, 『옥파비망록』, 1919년 2월 8일(『옥파이종일선생논설집』 권3, 서울: 교학사, 1984, 513. 이하 『옥파비망록』은 면수만 기록함), “내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뜻과 같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현희는 “의암 손병희와 3.1운동”(『동학학보』 제17호, 2009, 308)에서 “이종일이 이전에 『천도교월보』를 편집할 때 과격한 언행이 있었다는 의견으로 인해 권동진, 오세창 등에 의하여 소외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 5) 최남선, “내가 쓴 독립선언서,” 『새벽』 2권 2호(1955. 3), 8-9.  
『조선독립운동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3), 133.
- 6)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 최남선 취조서(이병현, 『삼일운동비사』, 서울: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659. 이하 취조서 등은 면수만 기록함), “피고가 썼다는 선언서를 인쇄한 것이 이것인가? 그렇다.”  
1919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 최린 취조서(576), “최남선에게 말하니 그가 문장을 쓴다고 하기에 의외하였으며, 선언서의 골자는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1919년 7월 18일 경성지방법원, 권동진 취조서(191), “선언서와 건의서 등 일체의 문장은 최남선이 저작하였다.”
- 7) 공소공판기, 최남선(804), “독립선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는가? 그렇다. 내가 초안하였다.” “25-6일경에 초안을 해가지고 27일경에 최린에게 넘겼나? 그렇다.”(실은 2월 20일에 기초가 완료되었으므로 27일에 최린에게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공소공판기, 최린(788), “최남선이 나를 대신하여 글을 지었다.”
- 8) 『張孝根日記』. 1919년 2월 21일(『한국사논총』 제1집, 서울: 성신여자사범대학 국사교육과, 1976, 156. 이하 『장효근일기』는 면수만 기록함), “二十一日, 作六堂獨立宣言書.”
- 9) 3·1독립운동 당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는 정재용이 직접 새긴 『고양 북한산 3·1운동 암각문』(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2호)에는 “獨立宣言紀事, 己未年二月十日朝鮮獨立宣言書作成, 京城府□□町六堂 崔南善也.”(독립선언기사. 기미년(1919) 2월 10일 조선독립선언서 작성. 경성부 □□정 육당 최남선)라고 되어 있다. 이 암각문에는 “京城府□□町”과 같이 마멸되어 판독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1919년 4월 7일의 경성지방법원의 최린 취조서(576)에는 최남선이 살던 지역을 “京城府內 水下町”이라고 하였다.
- 10) 홍일식, “3·1 독립선언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1989), 198, 220, “선언서 본문과 공약삼장 모두 최남선에 의해 기초되었다는 조용만과 신용하의 연구에 동조하며, 공약삼장을 포함한 선언서 전부를 최남선이 지은 것이 틀림없다.”  
박결순, “3·1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자에 대한 재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6집(2008 가을호), 202, “공약삼장을 포함한 내용이나 체제는 육당이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과 부합된다.”
- 11) 박결순, “3·1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자에 대한 재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6집(2008 가을호), 202.
- 12) 최남선, “내가 쓴 독립선언서,” 『새벽』 2권 2호(1955. 3), 8.

동의를 얻은 선언서가 된 것이다.<sup>14)</sup> 이 『독립선언서』는 李鍾一(1858~1925)<sup>15)</sup>의 책임 하에 천도교 계열의 보성사에서 인쇄되어 전국적으로 배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검경의 취조서와 이종일의 비망록<sup>16)</sup> 그리고 당시 보성사 총무였던 장효근의 일기<sup>17)</sup> 등을 통해 확인이 된다.

## 2.1 인쇄일

『독립선언서』의 인쇄일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문제는 『독립선언서』의 전국적인 배포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이종일은 입수와 인쇄에 대한 일본검경의 질문에 오세창에게서 받은 『독립선언서』<sup>18)</sup>를 27일에 인쇄를 마쳤다고 하였고, 오세창, 권동진, 최린 등도 그렇게 답변하였다.<sup>19)</sup> 그래서 일본검찰의 예심종결서에는 2월 27일에 인쇄를

13) 『서울抗日獨立運動史』(서울: 서울특별시, 2009), 313.

14) 이종일의 외손인 박인성씨는 “선언서 원본이 집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한국동란 때 인민군에게 모두 빼앗겼다.”(이정은, “독립선언서 ‘異本’ 연구”, 11)고 하였다. 박인성이 말한 원본이 오세창이 최종 淨書한 정고본인지 아니면 보성사 인본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후일 독립선언서 원본이나 관련 자료의 공개를 기대해본다.

15) 이종일은 “3·1독립운동이 경술국치 직후부터 그에 의하여 복안이 이루어져 왔고, 그 계획을 1911년 손병희에게 건의”(김창수, “옥파 이종일의 민족독립운동”, 『옥파 이종일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1995, 76)하는 등 독립선언서의 인쇄 배포뿐 아니라 당시 독립운동의 사상과 행동의 주역이었다.

16) 현재 이종일의 비망록 원문은 광무 2년(1898) 1월부터 광무 6년(1902) 3월까지 전한다. 그 이후의 기록(1919년분 포함)은 분실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 다행히 활자화된 국역문 일부가 전하는데, 3·1독립운동 전후의 비망록은 이 국역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한국사상』 제16집(한국사상연구회 편, 서울: 보성사, 1978, 268-350)에는 『默菴備忘錄』(권1-2)이라는 제명으로 1898년 1월 1일부터 1899년 5월 31일까지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국역문은 『월간중앙』1979년 3월호에 일부 소개된 이후 『한국사상』 제19집(한국사상연구회 편,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2, 223-242)에 『묵암 이종일선생 비망록(4)』라는 제명으로 1918년 1월 27일부터 1919년 11월 22일까지 소개되어 있다. 이후 국역문은 『옥파이종일선생논설집』 권3(옥파문화재단 옥파기념사업회, 교학사, 1984)에 『옥파비망록』이라는 제명으로 거듭 수록되어 전한다.

17) 『장효근일기』, 1919년 2월 27일(156), “二十七日. 木. 陽. 夜獨立宣言書二萬一千枚, 印刷於普成社.”

18) 1919년 4월 16일 경성지방법원, 이종일 취조서(392), “2월 20일경에 오세창의 집에 가니 인쇄물(원고)을 보내겠으니 그리 알라고 했고, 2월 26일에 오세창이 와서 독립선언서 2만매 가량을 인쇄해달라고 하므로 승낙하고 2만1천매를 인쇄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抗日獨立運動史』(서울: 서울특별시, 2009, 313)에는 예심종결결정서 등을 참고로 하여 “오세창이 선언서 원고가 아니라 조판한 것을 준 것은 보성사 직원이 조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남선이 자신이 경영하는 신문관 직공에게 조판케 하여 최린에게 讎校한 것을 다시 오세창에게 보냈기 때문이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보성사 직원이 조판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당시 보성사는 60명(“총무 張孝根, 서기 朴根采, 공장감독 金弘奎, 간사 印宗益을 비롯하여 60명”, 이종일 취조록, 395) 또는 40명(“보성사 직원 40명은 극비리에 이것을 위장 인쇄, 『옥파비망록』, 506)이 제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직원이 어떤 이유에서든 조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보성사는 신문까지 발행하고 있던 최고 수준의 인쇄소였다. 실제로 보성사에서는 “독립선언서는 내가 김홍규, 장효근에게 採字하게 하였다.”고 한 이종일의 비망록(4월 16일, 514)에서 보듯이 독립선언서의 문선과 조판을 담당하였다.

19) 1919년 3월 2일 제2회 신문조서. 경무총감부, 이종일 취조서(390), “그 전부를 2월 27일 밤에 인쇄하였는가? 그렇다.”

1919년 7월 21일 경성지방법원, 이종일 취조서(396), “27일 오후 5-6시경에 오세창이 원고를 가지고 와서 나는

마친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sup>20)</sup>

그러나 인쇄 책임자인 보성사 사장 이종일은 27일 밤이 아니라 24, 25일에 1차 인쇄가 끝나자 천도교본부를 거쳐 지방의 천도교당에 발송하고,<sup>21)</sup> 26일에는 각계의 동지들에게 수 천매씩 배포하였다고 비망록에 기록해 놓았다.<sup>22)</sup> 실제로 24일에 「독립선언서」를 입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당시 전주의 신흥고보 교감이던 유병민이 2월 24일 자정쯤에 졸업생으로부터 33인이 署名한 한 장으로 된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았다<sup>23)</sup>는 것이다. 이 「독립선언서」는 33인의 서명이 있었으므로 보성사에서 인쇄 배포한 「독립선언서」가 틀림없다.<sup>24)</sup> 그리고 유병민은 이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은 다음날인 25일 밤부터 이것을 대본으로 등사한 사실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24일 자정 경에는 전주지역까지 撒布된 것이 확인되는 셈이다.<sup>25)</sup> 이렇게

비로소 독립선언서를 보았다.”

1919년 7월 21일 경성지방법원, 이종일 취조서(398), “오세창에게서 선언서를 2월 27일에 받아서 같은 날 인쇄하였다.”

1919년 8월 21일 고등법원, 오세창 취조서(522), “언제 인쇄가 다 되었는가? 2월 27일 밤에 인쇄가 다 되었다.”  
1919년 7월 18일 경성지방법원, 권동진 취조서(189), “선언서는 2월 27일에 인쇄가 되어 이종일이 그 한 장을 나에게 가져왔다.”

1919년 7월 17일, 경성지방법원, 최린 취조서(593), “이 선언서는 어느 때 인쇄되었는가? 2월 27일에 되었다.”  
공소공판기, 이종일(793), “27일 밤부터 28일까지 2만 천장을 인쇄하였는가? 27일 자정까지 인쇄하였다.”

20) 1919년 12월 20일 예심종결서, 주문, (767), “이종일은 동월 27일 … 보성사에서 … 독립선언서 2만1천매를 27일 밤 11시경에 인쇄를 마치고”

21) 『옥파비망록』, 3월 11일(513),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것은 27일 밤이라고 답변했으나 실은 2월 20일경부터 서서히 찍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2월 24, 25일 먼 지역의 천도교 교구에는 우선적으로 발송하였다.”

22) 『옥파비망록』, 2월 26일, “26일에는 1차로 인쇄된 것을 각계 동지들 7, 8명에게 2천매에서 3천매씩 배포하였던 것이다.”

23) 劉秉敏, “내三一運動의 記錄,” 『新天地』 1권 2호(1946), 111, “2월 24일 나는 전주신흥고보에서 교감의 직분을 갖고 있었다. 자정이 될 쯤 졸업생 李君이 아무런 말도 없이 한 장의 종이를 전하였다. 그것은 서울에서 비밀히 전달된 33인 署名의 독립선언서였던 것이다.”(간략히 정리함)

24) “署名”이란 오늘날 주로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쓴 것”이라는 법률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자기의 이름을 써넣은 것”을 의미하였다.

1919년 3월 1일에 “조선군헌병대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한 보고”(韓國民族運動史料: 三一運動篇 1, 한국인문과학원, 1998, 2)에는 “선언서에 천도교 기독교 신도들의 署名이 있으나 … 선언서에 署名한 자는 대부분 체포하였다.”고 되어 있다.

최남선은 「독립선언서」를 자신의 저술에 수록하면서, 『조선역사』(1946)에서는 “朝鮮民族代表(三十三人署名)”, 『조선독립운동사』와 『조선독립운동소사』(1946)에서는 “朝鮮民族代表(孫秉熙以下三十三人署名)”과 같이 사용하였고, 같은 해에 발행된 조선과학자동맹의 『조선해방과 삼일운동』: 삼일운동과 조선해방기념논집(서울: 청년사, 1946, 부록1-4)에서도 “三十三人署名略”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 韓日에서 사용한 “署名”이라는 의미는 “이름 기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유병민이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란 “33인의 이름이 기재된 독립선언서”라는 뜻이므로 보성사에서 인쇄한 독립선언서가 틀림없는 것이다.

25) 『옥파비망록』, 2월 25일(500), “25,000매를 1차로 인쇄 완료하여 천도교본부로 운반하였다.”

이 기록은 24일부터 천도교당을 거쳐 전국에 배포하였다는 자신의 3월 11일 기록과는 하루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24일 자정에 독립선언서가 전주지역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이 기록은 1차로 인쇄한 25,000매 모두 천도교본부에 운반을 끝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옥파비망록』의 원본이 분실되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이 매우 유감이다.

1차 인쇄분의 배포가 완료되자 27일에는 부족할 것을 고려하여 다시 2차 인쇄를 하게 되었다.<sup>26)</sup> 그런데도 『독립선언서』의 인쇄일에 대해 민족대표들은 모두 27일이라고 답변하였다. 아마 인쇄가 마지막으로 끝난 날짜만 답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보성사 총무인 장효근은 2월 21일의 일기에서 “육당 최남선이 지은 『독립선언서』를 본사(보성사)에서 인쇄하기로 결정되었다.”<sup>27)</sup>고 하였다. 아마 천도교 본부의 행정적인 결정이 이 날에 비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근자에 『독립선언서』의 인쇄일에 대해 “27일에 인쇄되었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sup>28)</sup>는 지적도 있듯이 이제 인쇄일은 이종일의 비망록 기록을 우선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독립선언서』는 1차 인쇄가 끝난 24일부터는 지방의 천도교구에 우선 살포되었고, 27일에는 2차 인쇄도 완료되었다는 기록이 거의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립선언서』는 28일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3월 1일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본 헌병이 『독립선언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9)</sup>

인쇄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일본 검찰의 조사결과와 비망록은 차이가 있다. 곧 예심종결서에는 “이종일은 동월 27일에 보성사 공장 감독 金弘奎에게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것을 명하자 김홍규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인쇄직공 申永求에게 인쇄를 명하여 27일 밤 11시경에 인쇄를 마쳤다.”<sup>30)</sup>고 되어 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종일의 진술<sup>31)</sup>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종일은 비망록에서 “인쇄에 관해서는 가급적 관계인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거짓 대답하였다. 관계된 많은 동지를 구출하기 위해서였고, 특히 장효근을 살리고 싶었다.”<sup>32)</sup>고 하였다. 장효근을 이 일에서 배제시키고자 한 이유는 그 만이라도 『조선독립신문』을 계속 발행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sup>33)</sup> 그러나 실제로는 “채자(문선)는 총무 장효근과 공장감독 김홍규가 맡았고,”<sup>34)</sup> 인쇄는 40여 명의 직원이 보성사 내에 있으면서 극비리에 위장 인쇄하였던”<sup>35)</sup> 것이다.

26) 『옥파비망록』, 1919년 3월 11일(513), “2월 27일에 2차로 1만 매를 더 인쇄하였다.”

27) 『장효근일기』, 1919년 2월 21일(156), “二十一日, 作六堂獨立宣言書, 決其印刷本社.”

28) 이정은, “3.1독립선언서 ‘異本’ 연구,” 12.

29) 1919년 3월 1일에 “조선군헌병대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한 보고”(韓國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篇 1, 한국인문과학원, 1998, 2), “오늘 1일 未明 當地에서 조선독립에 관한 선언서를 발견하였다.”

30) 1919년 12월 20일 고등법원, 예심종결서 주문(767).

31) 1919년 7월 21일 경성지방법원, 이종일 취조서(397), “김홍규에게 명령하여 採字하게 한 후 내가 교정을 보았다.” 1919년 3월 2일 경무총감부, 제2회 신문조서(390), “선언서는 신영구와 김홍규 두 직공에게 인쇄할 것을 명령하였고, 기타 직공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32) 『옥파비망록』, 1919년 3월 11일(513).

33) 『옥파비망록』, 1919년 3월 10일(512), “장효근을 이 관계에서 구제키 위해 그를 끌어 들이지 않았다.”

『옥파비망록』, 1919년 4월 16일(515), “장효근은 실은 보성사 총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되면 이 인쇄소를 다시 재건하여야 하며 더욱이 조선독립신문도 계속 찍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34) 『옥파비망록』, 1919년 4월 16일, “독립선언서는 내가 김홍규, 장효근에게 採字하게 했는데 김홍규의 이름만 알려 주었다.”

1919년 4월 16일, 이종일 취조서(515), “예심관사 나가시마 유조(永島雄藏)는 어쩌나 총명하지 우리의 사건계획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것 같아 면구스러웠다. 그가 나에게 ‘독립선언서 원고를 장효근에게 주어 그가 다시 김홍규에게 인쇄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리하게 질문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해서 움찔했다.”

한편 취조서에는 최남선이 만든 조판에 대한 내용이 있다. 곧 이종일은 “최남선이 경영하던 新文館의 직공이 조판하여 최린에게 보낸 것을 가지고 인쇄를 마쳤다.”<sup>36)</sup>고 하였고, 최남선 역시 실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조판하고 교정하였다.”<sup>37)</sup>고 인정하였다. 더욱이 보성사의 인쇄 실무자인 김홍규도 “이종일이 최린의 집에 조판이 있으니 가져다 찍으라.”<sup>38)</sup>는 말을 따랐다 하였고, 이종일 역시 이를 인정하는<sup>39)</sup> 등 최남선이 만든 조판으로 인쇄한 것은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자로서 일생을 관철하고 독립운동의 전면에는 나서고 싶지 않다고 한 최남선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기록들과 판결문을 인정하여,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만든 조판으로 보성사에서 인쇄하였다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남선의 조판과는 달리 보성사에서 조판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채자(문선)는 보성사 총무 장효근과 공장감독 김홍규에게 맡겼다.”<sup>40)</sup>는 이종일의 비망록 기록과 “오후 5시에 이종일이 직접 교정을 보았다.”<sup>41)</sup>고 한 김홍규의 답변이다. 이렇게 보성사의 조판기록도 시간과 담당 직원까지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남선이 조판한 것이 있는데 보성사에서 왜 다시 조판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더욱이 보성사에서 첫 인쇄 작업을 하던 때에 최남선은 보성사 직원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으므로<sup>42)</sup> 분명 그들은 협력관계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독립선언서」 전본을 살피면서 찾을 수 있었다. 곧 선언문과 민족대표 명단을 별도로 조판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판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5) 『옥과비망록』, 1919년 3월 1일(508).

『韓國印刷大鑑』(서울: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969), 127, “당시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朴仁煥, 朴辰鳳 등 두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했는데 나중에 보성사에서 인쇄한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회고하였다.”

36) 1919년 12월 20일 고등법원, 예심종결서 주문(767).

37) 공소공판기, 최남선(804) “최린이 조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교정도 하였다.”

38) 공소공판기, 김홍규(834), “整版은 최남선의 인쇄소에서 가져왔다 하는데 그런가? 사장(이종일)의 말이 최린의 집에 그 판짜놓은 것이 있으니 가져다가 인쇄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

39) 공소공판기, 이종일(793), “애초에 오세창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오세창은 최남선의 집에 판이 짜있었으니까 가져다가 박으라 하기만 하였다.”

[1919년 7월 21일 경성지방법원], 이종일 취조록(404), “이것은 피고가 담당해서 선언서를 인쇄한 殘版인가? (이때 압수 증제250호1-2와 제260호를 보임) 그렇다. 그것은 최남선이가 조판하여 온 것이다.”

40) 『옥과비망록』, 1919년 4월 16일, “독립선언서는 내가 김홍규, 장효근에게 採字하게 했는데 김홍규의 이름만 알려 주었다.”

1919년 4월 16일 이종일 취조서(515).

41)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 김홍규 취조서(748).

42) 『옥과비망록』, 1919년 2월 20일(513), “오늘부터 독립선언서를 보성사에서 인쇄하기 시작하였다. 장효근, 김홍규, 최남선, 신영구와 내가 좁은 인쇄소에서 문을 굳게 닫고 찍었다.”

## 2.2 인쇄매수

『독립선언서』의 인쇄매수에 대해서는 21,000매 또는 35,000매로 다르게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 21,000매는 일본검경의 취조서와 판결문을 따른 것이고, 35,000매는 인쇄 책임자인 이종일의 비망록을 따른 것이다. 먼저 『독립선언서』의 인쇄사실을 알고 있을만한 민족대표들이 일본검경에게 답변한 매수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취조서와 판결문에 보이는 「독립선언서」의 인쇄매수

구분	인쇄매수	인물 및 자료(면수) <sup>43)</sup>	근거
1	만 수 천 장	손병희 취조서(73)	1919. 8. 21. 고등법원
2	모름	최린 취조서(581)	1919. 4. 7. 경성지방법원
3	22,000 22,000-23,000	권동진 취조서(180) 상동 (189)	1919. 3. 1. 경무총감부 1919. 7. 18. 경성지방법원
4	20,000 20,000	오세창 취조서(507) 상동(522)	1919. 3. 1. 경무총감부 1919. 8. 21. 고등법원
5	21,000 <sup>44)</sup>	이종일 취조서(387-8) 상동 (392) 상동(396)	1919. 3. 1. 경무총감부 1919. 4. 16. 경성지방법원 1919. 7. 21. 경성지방법원
6	21,000	예심종결서(767) 판결문(838)	1919. 12. 20.

<표 1>에서 보듯이 손병희는 만 수 천 장, 오세창은 20,000매, 이종일은 21,000매, 권동진은 22,000-23,000매, 최린은 모른다는 등 인쇄매수에 대한 답변에는 차이가 있다.<sup>45)</sup> 이종일을 제외한 다른 민족대표들도 인쇄매수를 알만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사실을 회피한 답변으로 보인다. 예심종결서와 판결문에서는 21,000매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인쇄책임자인 이종일의 답변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인쇄일와 매수에 대해 이종일은 자신의 비망록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2월 20일) 오늘부터 『독립선언서』를 보성사에서 인쇄하기 시작하였다. 장효근, 김홍규, 최남선, 신영구와 내가 좁은 인쇄소에서 문을 굳게 닫고 인쇄하였다.”<sup>46)</sup>

43) 이병현, 『삼일운동비사』 면수.

44) 이종일은 20,000매라고 답변한 적이 있고, 공소공판기에는 22,000매 또는 21,000매로 되어 있음.

45) 이외에도 권병덕은 20,000매 가량(1919.3.1. 경무총감부 취조서, 218), 한용운은 20,000매(1919. 고등법원 취조서, 614)라고 답변하였음.

46) 『옥과비망록』, 1919년 2월 20일(500).

최남선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날짜에 대해, 2월 22, 23일(“내가 쓴 독립선언서”, 8)이라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2월 24, 25일) 먼 지역의 천도교 교구에는 우선적으로 발송하였다.”<sup>47)</sup>

“(2월 25일) 25,000매를 우선 1차로 인쇄 완료하여 천도교본부로 운반하였다.”<sup>48)</sup>

“(2월 27일) 오늘까지 2차로 10,000매를 더 인쇄하여 천도교당으로 가지고 가다가 과출소에서 검문을 당했으나 족보라고 속이고 겨우 운반했다.”<sup>49)</sup>

인쇄매수에 대한 위의 내용은 그가 구속되기 이전에 기록해둔 것으로 보이는데, 인쇄일과 매수 그리고 과정이 분명하므로 믿을만하다. 이후에도 그는 “『독립선언서』는 2회에 걸쳐 35,000장을 인쇄하였다.”<sup>50)</sup>거나 “(일본검사가) 『독립선언서』를 얼마나 인쇄했느냐고 묻기에 20,000여 장이라고 대답했으나 실은 처음에 25,000장, 나중에 10,000장 등 두 번에 걸쳐 35,000장을 찍은 것”<sup>51)</sup>이라고 하는 등 인쇄매수에 관해서는 계속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쇄매수에 대한 여타의 기록이 없는 현재, 당시 인쇄 책임자가 일본검경에게 답변한 것 보다는 오히려 그의 비망록이 믿을만 하므로 인쇄매수는 35,000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당시 보성사 총무였던 장효근은 “1919년 2월 27일 밤에 『독립선언서』 21,000매를 보성사에서 인쇄하여 각도의 주요지역의 교인에게 반포하였다.”<sup>52)</sup>고 기록해 놓았다. 그가 기록한 인쇄일과 매수는 이종일이 일본검경에게 답변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런데 『독립선언서』는 24일 자정 경에 이미 전주지역에 배포가 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장효근의 기록은 정확하지 못한 셈이 된다. 처음부터 인쇄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인쇄일과 매수에 대해 이렇게 기술한 것은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혹 석방이후에 정리한 것이라면, 수감과정에서 알게 된 “27일 21,000매 인쇄”로 기록함으로써 실제 인쇄일과 매수를 영원히 숨기고자 한 의도가

공소공판기에는 “25-6일경에 초안을 한 뒤 27일경에 최린에게 넘겼는가?”라는 일본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공소공판기, 804)고 대답하였다. 또 다른 사람의 기록에는 22-23일 이전에 기초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20일에 인쇄를 시작하였다는 이종일의 비망록 기록이 정확하다면 최남선의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고, 최남선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이종일이 날짜를 착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이 1차 인쇄의 완료날짜는 24일이다.

47) 『옥파비망록』, 1919년 3월 11일(513).

48) 『옥파비망록』, 1919년 2월 25일(500).

49) 『옥파비망록』, 1919년 2월 27일(500).

이정은의 “『독립선언서』 異本 연구,”(11)에는 이종일의 외손인 박인성씨의 증언가운데 “보성사 두 채의 인쇄소 건물 중 바깥채에서는 전주이씨 족보를 찍었고, 안채에서 선언서를 찍었다.”는 내용이 있다.

50) 『옥파비망록』, 1919년 11월 22일(517), “(김홍규는) 보성사의 공장 감독으로 나의 지시에 따라 장효근, 신영구 등과 함께 1·2차에 걸쳐 『독립선언서』 3만5천장을 인쇄했고 …”

51) 『옥파비망록』, 3월 1일(506), “선언서를 얼마나 인쇄했느냐고 묻기에 나는 2만여 장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실은 두 번에 걸쳐 3만5천여 장을 찍은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에 2만5천장, 그리고 나중에 1만장을 찍었다. 그것은 처음 인쇄분만으로는 우리 2천만 민중이 한사람씩 다 갖고 독립만세를 절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의암성사와 협의해서 더 찍기로 양해가 되어 있었다.”

52) 『장효근일기』, 1919년 2월 27일(156), “二十七日. 木. 陽. 夜獨立宣言書, 二萬一千枚, 印刷於普成社, 頒布各道, 主要地教人, 及有志, 逼近絶叫, 萬歲運動之日, 期於參與, 擔忿雪恥.”

천도교의 기관지인 『新人間』에는 『장효근일기』의 해제 및 평가<sup>1)</sup>(제346호)에 이어 『張孝根日記 完譯註』라는 제목으로 제347호부터 제349호까지 3회에 걸쳐 번역문과 원문이 소개되어 있으나 온전하지가 않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3)</sup>

이와 같이 『독립선언서』는 최남선과 보성사의 조판을 거쳐 이종일의 책임 아래 2월 20일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여 24, 25일에는 1차로 인쇄된 25,000매를 먼 지역부터 살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종일이 26일에 동지 7-8명에게 2-3천매씩 배포한 것을 “1차로 인쇄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2차 인쇄는 1차 인쇄분이 소진된 후인 27일에 10,000장을 추가 인쇄<sup>54)</sup>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쇄매수는 이종일의 일본검경에게 거짓 답변한 21,000매보다 그가 비망록에서 남긴 1, 2차에 걸쳐 35,000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sup>55)</sup>

### 3. 판본과 원본

#### 3.1 판본

『독립선언서』의 題名은 「선언서」이다. 현전하는 『독립선언서』 중에서 국가명이 “鮮朝”로 도치되어 있는 보성사 인본은 <사진 1>과 같이 민족대표 명단의 가로 위치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곧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 日 朝鮮民族代表”가 있는 행과 민족대표 33인의 명단이 시작되는 행의 가로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병희의 “孫”자의 경우, <A본>은 “千”자와 거의 동일한 선에 있으나 <B본>은 “四”자, <C본>은 “四”자와 “千”자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민족대표인 李弼柱에 와서는 오른쪽에 있는 “日”자가 각기 다른 이름자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33인의 명단은 하나의 네모상자가 움직이듯이 상하로 미세한 차이를 보여준다. 전본 중에서 <A본>의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는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소장본, 이희선 소장본, 최남선의 장손인 최학주의 소장본,<sup>56)</sup>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본<sup>57)</sup>, 박종화 옛 소장본, 최봉렬

53) 장효근은 3월 1일의 일기에서 “조선 『독립선언서』 인쇄의 일 때문에 1일에 경찰에 체포되었으므로 1일 이후 8월 5일까지 일기는 쓰지 못하였다.”(『장효근일기』(156). 1919년 3월 1일, “土. 陽. … 朝鮮獨立宣言書印刷事, 一日警察署被捉, 故一日以後, 至八月五日, 日記雨晴, 不得書之.”)고 하였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 그가 석방된 8월 5일까지의 일기는 석방 이후에 기록한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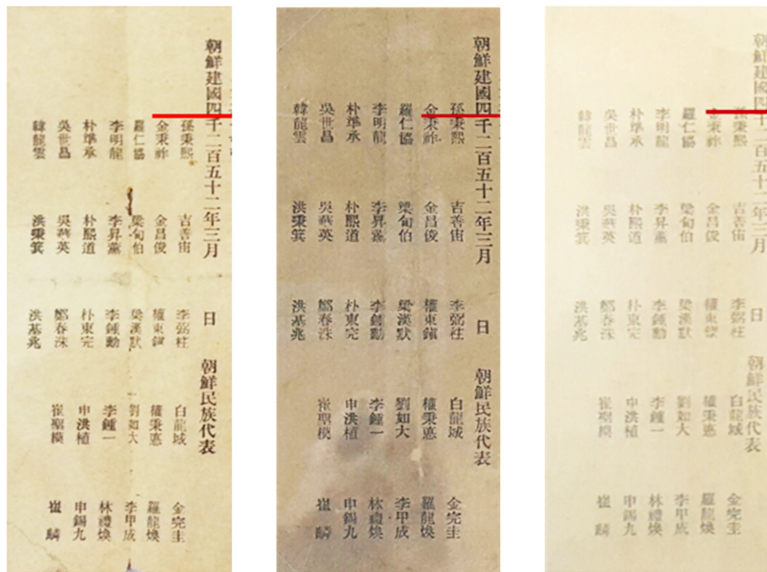
54) 이정은의 “3·1독립선언서 ‘異本’ 연구,”(11)에 따르면, 이종일의 외손인 박인성씨가 “나라 이름이 ‘鮮朝’로 바뀌어 있어서 그것만 바로잡아 1만매를 찍었다.”는 증언을 하였다고 한다. 1차 인쇄이후 2차 인쇄까지는 2-3일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오류를 알았다면 교정할 시간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증언과 같이 국가명만 바로 잡아 인쇄한 독립선언서는 보이지 않는다.

55) 이정은, “3·1독립선언서 ‘異本’ 연구,”(16), “35,000매를 인쇄하였다는 이종일의 말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6) 『월간중앙』(2014.12.17.), 『사람과 사람』, 최학주가 소장하고 있는 『독립선언서』의 사진이 소개되어 있고, “육당은 독립선언서는 물론, 출판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혼자 총괄하였다.”고 하였다.  
『조선일보』(2015.5.25.), 『최보식이 만난 사람』, 최학주는 “독립선언서는 2만 여 장을 찍었는데 할아버지(최남선)의 유품에서 한 장을 발견”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소장본 등이다. 그런데 이 모두는 서울에서 뿌러졌거나 습득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B본>과 <C본>의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는 독립기념관 소장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본 등이 있다.

그런데 <B본>과 <C본>도 입수경위 등으로 보아 원본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판과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곧 민족대표 33인의 명단은 선언서, 공약삼장과는 별도로 조판되었고, 인쇄 직전에 이 두 개의 조판을 다시 하나의 판으로 짚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독립선언서」는 먼저 완성되어 조판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민족대표의 최종 확정은 지체되어 선언서와 함께 미리 조판해 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sup>58)</sup> 그래서 보성사에 넘겨진 최남선의 조판에는 민족대표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남선은 보성사에서 인쇄할 때 이종일과 함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협력관계였고, 또 일본경찰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로 複數의 「독립선언서」를 조판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보성사에서는 자체 소유의 인쇄기나 작업환경에 적합하도록 형태나 크기 등을 조정하는 조판과정은 있었을 것이다.



<A본>

<B본>

<C본>

<사진 1> 「독립선언서」 판본의 미세한 차이

57) 경성지방방법원 검사국의 조선총독부 검사였던 야마자와 사이치로(山澤佐一郎)의 원 소장본이라고 함.  
 58) 일본검경의 취조서에는 33인의 민족대표 중에서 신석규는 27일, 박동완과 김병조는 이보다 늦게 합류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33인의 민족대표의 서명이 있는 「독립선언서」는 24일에 인쇄되어 전주까지 배포되었으므로 24일 이전에는 33인의 민족대표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취조서 내용은 여러 면에서 사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독립선언서』를 活版 또는 鉛版으로 인쇄하였는지 아니면 이 둘을 혼용한 것인지는 애매한 점이 있다. 그런데 보성사는 8면 활판기를 독일에서 수입해 오는 등 20세기 초기 한인이 경영하는 인쇄소로는 가장 시설이 좋았다고 한다.<sup>59)</sup> 또한 보성사의 인쇄감독 김홍규가 일본검경에게 “인쇄한 연판은 이중일이 파기하였다.”<sup>60)</sup>고 답변하였으므로 연판으로 인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보통 연판은 紙型을 하나 마련해서 계속 만들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독립선언서』 전본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견된다. 그렇다면 처음 인쇄매수를 적게 생각하고 지형을 그때그때 폐기하였거나 아니면 여러 이유로 지형이나 연판을 계속 사용할 수 없었을 경우도<sup>61)</sup>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당시 연판만으로 인쇄하였다면, 하나의 연판으로는 5,000매, 코팅하면 7,000-10,000매를 인쇄할 수 있었다고 하므로 25,000매를 찍은 1차 인쇄에는 3-5개, 10,000매를 찍은 2차 인쇄에는 1-2개가량의 연판이 제작되었을 것이다.

### 3.2 원본<sup>62)</sup>

현재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인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48점)에는 『독립선언서』 중의 두 점이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sup>63)</sup> 『3·1독립선언서』(신문관판)”<sup>64)</sup>과 같이 괄호 안에 판종이 병기되어 있다. 현재 유일본으로 전하는 이 신문관판은 “오수열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것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청년 이병현이 오수열씨에게 맡긴 것”<sup>65)</sup>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수열은 한때 자신의 소장본이 眞本이라고 언론에 알려 기사화되기도 하였다.<sup>66)</sup> 이에 대해 이정은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할 때 그 탁자 위에 놓여졌던 것이 정본이 되어야 한다.”<sup>67)</sup>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고 요약해 놓았다.

이 두 판에 대한 국가지정기록물 해설에서는 “(『독립선언서』)는 신문관에서 조판하였으나 그 조판의 짜임이 좋지 않아 보성사에서 다시 조판하여 인쇄한 것이며, 보성사판에는 국호가 “鮮朝”로

59) 『韓國印刷大鑑』(서울: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969), 127.

60) 1919년 3월 15일 종로경찰서조서, 김홍규 취조서(749), “인쇄한 연판은 어찌 되었는가? 이중일이 파기하였다.”

61) “紙型과 鉛版의 故障,” 『新聞印刷』: 印刷篇(東京: 日本新聞協會, 1964), 56.

62)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에서 보성사판, 신문관판으로 판종을 구분해놓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두 판본의 구분을 위해 이를 따른다.

63) 5.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 크기 20.1×44.9cm, 유물관리번호: 001152-000.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subPage/nationalArchives11.do>)

64) 10. 3.1독립선언서(신문관판). 크기 25.4×36.0cm. 유물관리번호: 0012880-000.

65) 김도형, 『3.1운동관련독립선언서류』 해설.

66) 『조선일보』(1991. 2. 27. 십자로), 『己未독립선언서 眞本아니다』, “오수열씨는 현행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기미년 독립선언서는 육당 최남선이 작성한 원본이 아니며, ... 월탄 박종화씨의 소장본은 해방이후 鉛版으로 재인쇄한 것이므로 기미년 당시 전국에 배포된 원본이 아니다.”

67) 이정은의 “3·1독립선언서 ‘異本’ 연구,”(14).

바뀌어 있다.”<sup>68)</sup>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처음 조판한 신문판에는 국호가 바르게 되어 있었으나 보성사에서 다시 조판을 하면서 국호의 도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문판판은 판형과 활자체가 보성사판과 다를 뿐 아니라 국호도 바로 되어 있고, 현대적인 한글 표기법과 띄어쓰기도 해 놓았다. 또한 “四億萬支那人”을 “四億支那人”으로 고치는 등 보성사판의 오식이나 오자를 교정해놓은 것으로 보인다.<sup>69)</sup> 그런 점에서 이 신문판은 보성사판보다 후에 조판 인쇄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두 판의 선후 또는 「독립선언서」 원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제기되었으나<sup>70)</sup> 아직도 확정되지는 못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근거로 이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첫째, 3월 1일 태화관에서 모인 민족대표들이 회동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 낭독하기로 결정되었음은 한용운의 답변<sup>71)</sup>에서 알 수 있다. 낭독이 결정되자 손병희는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한 이종일에게 낭독을 요청하였고, 그는 誤字를 고치고 낭독하였던 것이다.<sup>72)</sup> 이렇게 보성사에서 인쇄한 오자(국호 도치)가 있는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sup>73)</sup>들의 회동 때 낭독대본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3월 1일 민족대표 앞에서 낭독되었고, 당일에도 뿌려진 그 「독립선언서」가 원본인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 사실은 덮어둔 채 당시 이종일이 오자가 없는 「독립선언서」로 대체하였다거나<sup>74)</sup> 심지어 선언서 낭독이 생략되었다<sup>75)</sup>고도 한다.

둘째, 최남선(1890~1957)은 1946년에 발행한 『조선역사』, 『조선독립운동사』, 『조선독립운동소사』 등에 그가 기초한 「독립선언서」 全文을 수록해 놓았다.<sup>76)</sup> 그렇다면 최남선이 조판하였다는

68) 김도형, 『3.1운동관련독립선언서류』 해설.

69) 국호의 도치뿐 아니라 문자의 異同도 있는데, 보성사판의 행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행(鮮朝, 朝鮮), 5행(并進, 並進), 8행(剝喪, 剝奪), 11행(宣暢, 宣揚), 13행(苦恥, 苦耻), 18행(植民地, 殖民地), 21행(懲辦, 懲辨), 25행(併合, 合併), 30행(四億萬支那人, 四億支那人), 31행(共倒同亡, 共倒同亡), 38행(回蘇, 回蘇), 40행(躑躅, 躑躅), 43행(并進, 併進), 45행(陰佑, 陰祐), 민족대표(李鍾勳, 李鍾勳)

70) 『조선일보』(1986. 3. 2. 3면), 「獨立선언서 원본」(서회건 기자), “수록된 선언서가 서로 다른데도 어느 것이 원본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 교과서에 수록된 선언서가 75년 개정 때부터 최남선기초본과 오세창퇴고본으로 바뀐 것도 석연치 않다.”고 하였다. 문맥으로 보아 최남선기초본은 그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적해 준 오수열씨가 소장한 신문판판이고, 오세창퇴고본은 보성사판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71)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 한용운 취조록(608), “명월관 지점에서는 동지들뿐이니 ... 독립선언서의 낭독 여부를 의논한바 낭독을 하기로 하고”

72) 『옥과비망록』(502), “의암(손병희)이 나에게 직접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했으니 크게 낭독하라기에 誤字를 고치고 그렇게 따랐다.”

73) 1919년 7월 21일 고등법원, 함태영 취조서(656), “최초의 대표자 중에는 金仁全, 金智煥, 安世桓이 있었으나 제2회에는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金昌俊, 白龍成, 申錫九, 崔聖模가 가입하였고, 제3회에는 朴東完, 金秉祚가 가입하여 결국 33인이 되었다.”

74) 『조선일보』(1986. 3. 1. 6면), 「독립선언서 세 가지 판으로 찍었다」(서회건 기자), “나라이름이 오식된 선언서를 도저히 그대로 내놓을 수가 없었다. 이종일은 배포용으로 쓰겠다고 생각했던 최남선의 선언서를 급히 다시 나눠주도록 지시하고 태화관과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할 선언서도 대체했다.”

75) 『서울抗日獨立運動史』(서울: 서울특별시, 2009), 322-3,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이미 단채로 보았으므로 독립선언서의 낭독은 생략하기로 하였다.”

76) 『朝鮮歷史』(新板, 高陽: 東明社, 1946. 2. 20), 176-180.

신문관관은 여기에 수록된 『독립선언서』와 문자가 동일해야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세 책에 수록된 『독립선언서』는 국호를 “朝鮮”으로 바로 잡은 것을 제외하고는 보성사판과 문자가 동일하다.<sup>77)</sup> 이렇게 최남선도 보성사판을 『독립선언서』의 원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sup>78)</sup> 이러한 사실로 보아 최남선이 신문관판을 조판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최남선의 장손인 최학주는 조부가 소장했던 『독립선언서』를 지금까지 보존해오고 있는데<sup>79)</sup> 이 역시 보성사판이다.

셋째, 3월 1일 태화관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민족대표 중의 한 사람인 金秉祚(1877~1948)는 이후 중국 상해에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 그는 1921년 3월에 上海의 宣言社에서 국한문혼용의 『韓國獨立運動史略』 上下를 발행하였다. 이 중 하책에는 『독립선언서』가 수록되었는데 원본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80)</sup> 다행히 『독립선언서』는 『동경유학생선언서』 등과 함께 『조선해방과 삼일운동』의 부록에 전재<sup>81)</sup>되어 있다. 수록된 원문 역시 국호를 “朝鮮”으로 바로 잡은 것을 제외하고는 보성사판과 문자가 동일하다.<sup>82)</sup> 아마 자신이 중국으로 갈 때 휴대하였던 『독립선언서』 또는 玄楯이 보낸 상해 임시정부의 소장본을 수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쪽이든지 상해 임시정부에서 지방선전부 이사로 활동하던 김병조가 독립자료의 하나로 수록해 놓은 이 『독립선언서』는 임시정부는 물론 중국에까지 알려진 조선의 『독립선언서』인 것이다.

한편 신문관판은 해방이후 여러 매체에 전제되었다.<sup>83)</sup> 아마 편집의 편의상 띄어쓰기나 현대적인 맞춤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70년 중반까지 보성사판과의 차이

『朝鮮獨立運動史』·『朝鮮獨立運動小史』(漢城: 東明社, 1946. 2. 20), 23-27.

77) 31행의 “共倒同仄”이 “共倒同亡”으로 되어 있으나 “仄”은 “亡”의 本字로 동일한 자이다.

78) 최남선, 이영화 옮김, 『조선독립운동사』(서울: 경인문화사, 2013), 134.

최남선의 저술을 현대어로 편집해 놓은 이 책에는 “내가 쓴 독립선언서”와 독립선언서 사이에 “근자에 발표되는 독립선언서를 열람해 보니 기초 당시의 그것과 간혹 부합하지 않은 데가 몇 곳 보여서 질정하여 원형을 증빙키로 하였다.”는 글이 작은 자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어디서 옮겨 놓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79) 『월간중앙』(2014.12.17.), 『사람과 사람』

80) 金秉祚, 『韓國獨立運動史略』 上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金秉祚, 『韓國獨立運動史略』 上 ([서울]: 一齋 金秉祚先生 紀念事業會, [1999])은 상해의 선민사에서 1920년에 간행된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대본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이며, 말미에 일제 김병조선생 공훈사 등이 실려 있다.)

81) 조선과학자동맹, 『朝鮮解放과 三一運動』: 三一運動과 朝鮮解放 記念論集 (서울: 청년사, 1946), 부록1-4, “여기에 게재하는 자료는 모두 1931년 3월, 상해 선언사에서 출판(된) 一齋 金秉祚씨(의) 저(술) 『韓國獨立運動史略』에서 전제하는 것이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82) 통용자나 이체자는 동일한 것으로 보았음.

83) 北岳山人, 『朝鮮獨立運動史』(서울: 조선출판문화주식회사, 1946. 2. 25.), 15-21.

최남선이 지은 동명사 발행본보다 5일 늦게 발행된 同名의 이 책에는 독립선언서 전문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식 맞춤법을 사용하고, 33인의 민족대표를 천도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등으로 나누어 수록해 놓았다. 독립선언서에 사용된 문자를 보니 신문관판과 거의 동일하다. 신문관판과의 연계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또한 『독립신보』 제267호(1947.3.1.), 『동광신문』(1949.3.1.), 『조선일보』(1959.3.1.) 등에 수록된 것은 보성사판 계통인데 비해 『신천지』 1권2호(1946.3.1., 서울신문사 발행), 『대동신문』(1946.3.1.) 등에 수록된 것은 신문관판 계통이다.

를 인식하지 않고 해외에서 발행된 관련 서적에서도 사진으로 소개<sup>84)</sup>되는 등 제법 알려져 왔다. 그러다가 “197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보성사관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sup>85)</sup>되었던 것이다. 또 당시 월탄 박종화의 소장본이 다양한 형태로 보급됨으로써 원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성사에서 인쇄한 국호가 도치된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들의 3월 1일 태화관 모임에서 낭독되었다. 그리고 해방이후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인 최남선의 저술에도 수록되었으며, 상해 임시정부 요원의 저술에도 수록되어 조선의 「독립선언서」로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독립선언서」 원본은 당연히 이 보성사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독립선언서」는 보성사관과 신문관판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신문관판은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한 점만이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살포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 4. 전 본

현재 공개된 「독립선언서」 원본은 몇 점만이 알려져 있다.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독립기념관,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공공기관과 이희선, 박종화, 최봉렬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최학주 등 개인이 각각 1점씩 소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등록문화재 2점을 중심으로 소장경위와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핀다.

### 4.1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소장본<sup>86)</sup>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소장본은 「독립선언서」 인쇄의 주도자로 볼 수 있는 吳世昌(1864~1953)의 옛 소장본이다. 2003년에 그의 넷째 아들인 吳一六이 다른 유물과 함께 이곳에 기증하였다.<sup>87)</sup> 아마 오세창이 민족서화계의 지도자로 줄곧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기증한 것으로 짐작된다. 오세창의 자는 仲銘, 호는 葦滄이다. 일본에 망명하던 중에 손병희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교하였고, 3·1독립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다.

현재 「독립선언서」는 배접되어 유리액자로 표구되어 있다. 표구 안쪽에 1968년 1월의 신문이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에 표구된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아래에는 오세창의 것으로

84) 朴慶植, 『朝鮮三·一 獨立運動』(東京: 平凡社, 1976), 93.

85) 이정은, “3·1독립선언서 ‘異本’ 연구,”(13).

86) 등록문화재 제664-1호.

87) 이동국, “葦滄의 學藝淵源과 書藝史 研究,” 『葦滄 吳世昌』: 예술의전당 기획 서예사 특별전:15 (서울: 예술의전당, 1996, 228)에는 기증되기 전 오일록 소장본으로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보이는 「昌」 등 2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 접힌 부분은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그런데 공약삼장이 끝난 다음에는 원래 “三月 日”과 같이 날짜는 인쇄되지 않았는데 이 소장본에는 삼월 다음에 “一”자가 補寫되어 있다. 옛 소장자인 오세창이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날짜까지 역사에 남기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소장본은 『독립선언서』 인쇄를 주도하고, 淨書까지 한 오세창의 옛 소장본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 4.2 이희선 소장본<sup>88)</sup>

이희선 소장본은 그의 부친인 李圭昕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독립선언서』는 오래전에 사진과 함께 신문에 소개된 바 있다. 당시 기사에는 金和鎭 옹의 고증이 아래와 덧붙여져 있다.

“1919년 3월 1일 당시 14세 소년이었다던 이규훈씨가 보통학교를 마치고 용산에 있는 선린상업학교에 진학코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남대문을 거쳐 종로 보신각 근처에 이르렀을 때 군중에 뿌려진 것을 주워 사 십 여년의 오늘까지 비장해두고 온 것이다. 이 『독립선언서』는 보성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선언서의 첫 줄에 『我朝鮮』에 이르러 『我鮮朝』의 오식이 있음은 당시 얼마나 분주하고 조급히 서둘러서 인쇄했는가를 알 수 있다.”<sup>89)</sup>

이 소장본은 앞면에 『獨立宣言書』라는 펜글씨가 쓰여 진 일제강점기 시대의 편지봉투에 담긴 채로 현재까지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비록 뒤쪽의 접힌 부분 가로 세로 각 2곳 등 모두 4곳에 종이로 보수를 해 놓았으나 배접되지 않은 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 4.3 기타

『독립선언서』는 날장으로 된 인쇄물의 특성상 망실되기 쉽지만 책 속에 끼워져 잘 전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거의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여러 점이 새롭게 공개되었다. 공공기관의 소장본으로는 일제강점기 함흥지방법원 검사로 근무하던 이시카와 노부시케(石川信重)의 1919년 조사철 속에서 발견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본,<sup>90)</sup> 송실대 교수였던 김양선이 해방전후 입수하여 기증한 송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본 그리고 독립운동가 김선량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독립기념관 소장본<sup>91)</sup> 등이 있다. 개인소장으로는 교육자인 김정실의 옛 소장이었던 최봉렬 소장본,

88) 등록문화재 제664-2호.

89) 『동아일보』 1962년 8월 6일자 4면.

90) 3·1독립운동 당시 함흥지방법원 검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이시카와 노부시케(石川信重) 검사의 조사철의 題名은 『大正八年保安法事件』이고, 표지에는 石川檢事라는 묵서와 함께 『石川藏書』라는 도장이 있음.

91) 『독립기념관 전시품도록』 (개정판, [천안]: 독립기념관, 2002), 92.

도록에는 이 독립선언서가 표지 앞뒤 면에 크게 사진으로 수록되어 있다.

1970년대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어 가장 많이 알려진 박종화의 옛 소장본<sup>92)</sup> 등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최학주의 소장본은 최남선의 옛 소장본이어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이외에도 「독립선언서」를 소장하고 있었다는 기록<sup>93)</sup>들도 있어서 향후 더 많은 원본이 공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 언

「독립선언서」는 암울하던 일제강점기에 민족대표 33인이 발의하고,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독립을 국내외에 알린 문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보편적인 가치를 주는 문화유산이자 기록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傳本을 열람하기 어려웠던 탓인지 자신 소장본의 신문관판이 원본이라고 주장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서지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연구를 위해서는 민족대표에 대한 취조서나 판결문이 필수적인 자료이지만 민족대표들이 거짓으로 답변한 것도 적지 않아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다행히 이종일의 비망록은 공개되던 시기에 수고본이 분실되어 국역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었지만 이 연구에는 필수적인 자료가 되었다. 이제 서지적으로 살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선언서」의 원본은 국호가 “鮮朝”로 도치된 보성사판으로 보아야 한다. 그 근거로는 민족대표들이 모인 태화관에서 이종일에 의해 낭독된 「독립선언서」는 誤字가 있는 보성사판이었다. 또한 최남선이 해방 이후에 발행한 자신의 저술인 『조선독립운동사』 등에 「독립선언서」를 수록해 놓았는데 이 역시 보성사판과 문자가 동일하다. 더욱이 33인 민족대표의 한 사람인 김병조가 중국 상해의 임정요원으로 재직하면서 펴낸 『한국독립운동사략』 하책에 수록해놓은 「독립선언서」도 보성사판과 문자가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원본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인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48점)에는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신문관판)”과 같이 괄호 안에 판종이 병기되어 있다. 신문관판의 옛 소장자는 최남선이 운영하던 신문관에서 조판한 인본인 자신의 소장본이 원본 또는 정본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하였다. 그가 근거로 든 여러 이유 중에는 고려할만한 것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한 점만이 전하는 신문관판은 민족대표 모임에서 낭독되지 않았고, 당일 국내에서 뿌려지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신문관판은 「독립선언서」의 異本 중의 하나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독립선언서」의 판종 구분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92) 월탄 박종화(1901~1981)는 이 선언문의 소장경위에 대해 “휘문의숙 4학년(19세)이던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탑동공원에서 뿌렸던 선언서”를 습득하여 “후손에게 한 장을 전한다.”고 하였다. 1973년 현암사 영인본 외에 삼일동지회에서도 이 소장본을 영인 수록한 『삼일독립선언서』가 있다.

93) 『조선일보』(1961년 3월 1일자 1면)의 만물상에는 「독립선언서」 원본에 대해 “일본검사가 증빙서류로 기소장에 첨부한 것이 하나 있고, … 대한 적십자를 창립한 R씨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언서를 한국연구도서관에 기증”한 일에 대한 소개가 있다.

셋째, 국가명이 “鮮朝”로 도치된 보성사관은 “朝鮮建國…民族代表”가 있는 행과 민족대표 명단이 시작되는 행의 가로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손병희의 “孫”자가 “千”자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A본>, “四”자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B본>, “四”자와 “千”자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C본> 등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현전본은 <A본>과 동일한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모두 서울에서 살포되었거나 습득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민족대표 명단이 상하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시차를 두고 조판된 선언서와 민족대표 명단을 합하여 다시 판을 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현재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소장본과 이희선 소장본 등 두 점이 등록문화재가 되었다. 전자는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오세창의 옛 소장본이다. 『독립선언서』는 원래 날짜가 인쇄되지 않았는데 이 소장본에는 삼월 다음에 “一”자가 補寫되어 있다. 이희선 소장본은 그의 부친인 李圭昕이 독립운동 당일인 3월 1일에 종로 보신각 근처에서 뿌려진 것을 습득한 것으로 배접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다섯째, 인쇄일은 이종일이 일본 검경의 취조과정에서 답변한 2월 27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쇄 책임자인 이종일은 비망록에서 1차 인쇄를 24일에 끝내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전주의 신흥고보 교감이던 유병민이 24일 자정쯤에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았다는 기록과 부합된다. 물론 27일에 최종 인쇄를 마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독립만세를 절규할 수 있도록 24일에 1차, 27일에 2차로 나누어 인쇄하였다는 이종일의 뜻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27일에 인쇄를 하였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쇄매수에 대한 일본검경의 질의에 대해 그 사실을 알만한 민족대표들도 모른다거나 20,000매 전후라고만 답변하였다. 이에 비해 인쇄 책임자였던 이종일은 21,000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함으로써 최종 판결문에서도 21,000매를 인쇄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종일은 비망록에서 일본검사에게 “20,000매라고 대답했으나 실은 처음에 25,000장, 나중에 10,000장 등 두 번에 걸쳐 35,000장을 인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인쇄매수에 대한 기록은 이종일이 일본검경에게 한 답변이나 그의 비망록 기록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여타의 기록이 없다면, 21,000매가 아니라 35,000매를 인쇄하였다는 이종일의 비망록 기록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참고문헌>

### [3·1독립선언서]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소장본, 이희선 소장본, 독립기념관 소장본,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본(이상 원본), 최학주 소장본, 최봉렬 소장본(이상 사진), 박종화 옛 소장본

(영인본).

[원전 및 자료]

- 『고양 북한산 3·1운동 암각문』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2호).  
『극비한국독립운동사료총서』 11 (3·1운동편). 서울: 한국출판문화원, 1989.  
『독립기념관 전시품도록』. 개정판. [천안]: 독립기념관, 2002.  
『독립선언서』. 부산: 삼일동지회, 1971.  
『독립운동사:2』 3·1운동사·상. 서울: 동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2.  
『묵암비망록』. 『월간중앙』 1979. 3.  
『묵암비망록』 권1-2. 『한국사상』 제16집. 서울: 보성사, 1978.  
『묵암 이종일선생 비망록(4)』. 『한국사상』 제19집.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2.  
『삼·일 독립선언서: 3.1운동 60주년기념』. 서울: 삼일동지회, 1979.  
『서울 독립운동의 역사현장』. 서울: 서울특별시, 2008.  
『서울항일독립운동사』. 서울: 서울특별시, 2009.  
『옥파비망록』: 『옥파이종일선생논설집』 권3. 서울: 교학사, 1984.  
『옥파이종일선생논설집』 권1-4. 옥파문화재단 옥파기념사업회, 서울: 교학사, 1984.  
『장효근일기 완역주』. 『신인간』 제347-349호, 1978.  
『장효근일기』. 『한국사논총』 제1집, 서울: 성신여자사범대학 국사교육과, 1976.  
『한국민족운동사료』: 1(3·1운동편).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8.  
『한국인쇄대감』. 서울: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969.

[단행본]

- 고춘섭. 『수양산인 정재용 전기』. 서울: 빛과 글, 2008.  
김병조. 『한국독립운동사략』 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김용호. 『옥파이종일연구』. 서울: 교학사, 1984.  
묵암기념사업회. 『(묵암 이종일선생) 警世의 위업과 생애』. 서울: 묵암기념사업회, 1979.  
박춘석. 『옥파 이종일』. 태안: 태안향토문화연구소, 2008.  
北岳山人. 『조선독립운동사』. 서울: 조선출판문화주식회사, 1946.  
안상교. 『대한독립선언서 총람』. 서울: 복지문화사, 1996.  
옥파기념사업회. 『옥파 이종일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광복50주년 기념 학술회의, 1995.  
이병헌. 『삼일운동비사』. 서울: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이태선. 『옥파 이종일 선생이야기』. 서울: 창작시대사, 2009.  
이현희. 『3·1 운동사론』. 서울: 동방도서, 1979.

- 조선과학자동맹. 『조선해방과 삼일운동』: 삼일운동과 조선해방 기념논집. 서울: 청년사, 1946.
- 최남선. 『조선독립운동사』. 한성: 동명사, 1946.
- 최남선. 『조선독립운동소사』. 한성: 동명사, 1946.
- 최남선. 『조선역사』. 신판. 서울: 동명사, 1946.
- 최남선. 이영화 옮김. 『조선독립운동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3.
- 환희. 『연기법의 생활』.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죽림정사, 2010.
- 朴慶植. 『朝鮮三・一 獨立運動』. 東京: 平凡社, 1976.
- 日本新聞協會工務委員會. 『新聞印刷』 印刷篇. 東京: 日本新聞協會, 1964.

#### [논문]

- 김소진. “3·1독립선언서 33인에 대한 인적 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7집(1993).
- 김소진. “1910년대의 독립선언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5.
- 김창수. “옥과 이종일의 민족독립운동.” 『옥과 이종일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회의(1995).
- 려증동. “기미독립선언문의 잘못에 대하여.” 『모국어교육』 제10권 1호(1992).
- 박결순. “3·1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자에 대한 재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6집(2008 가을호).
- 오수열. “기미년삼월일일『독립선언서』인쇄경위.” 『인쇄계』(1986. 3).
- 유병민. “내 삼일운동의 기록.” 『신천지』 1권 2호(1946).
- 이동국. “위창의 학예연원과 서예사 연구.” 『葦滄 吳世昌』 (서울: 예술의 전당, 1996).
- 이정은. “3·1독립선언서 ‘異本’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320회 월례연구발표회』(2016. 2).
- 이정은. “국가기록물이 된 3.1운동 독립선언서.” 『기록인』 제34호(2016. 봄).
- 이현희. “의암 손병희와 3.1운동.” 『동학학보』 제17호(2009).
- 임형진. “목암 이종일과 3.1운동.” 『한민족연구』 제8호(2009).
- 최남선. “내가 쓴 독립선언서.” 『새벽』 2권 2호(1955. 3).
- 홍일식. “3·1 독립선언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1989).

#### [전자정보원]

- 『독립운동관련판결문』.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